

〈일반논문〉

## 청대 길림의 재배삼과 자연환경\*

김 선 민 \*\*

〈목차〉

- I. 머리말
- II. 길림의 민인 이주
- III. 건륭연간 삼정과 민인
- IV. 재배삼의 등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한인의 이주와 재배삼의 등장을 통해 살펴본다. 청황실은 입관 직후부터 만주에서 인삼 채취를 독점해갔다. 만주지역에 주둔한 팔기 관병은 정해진 액수의 인삼을 채취하여 황실에 납부해야 했고, 황실은 만주에서 보내온 인삼을 내무부 창고에 저장하여 황실의 약재로 쓰고 나머지는 시가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청대 인삼 정책은 점차 한인들에게로 개방되어갔다. 옹정연간에 국가가 한인 상인들에게 인삼 업무를 위탁하고 기인과 민인 모두에게 인삼 채취를 허락하면서 한인들은 점차 인삼의 채취·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채삼활동에 민인들의 불법적인 채삼활동이 더해지면서 만주의 자연

\* 이 논문은 2020년 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삼은 빠르게 고갈되어갔다. 자연삼을 확보하지 못한 채삼인들은 재배삼을 몰래 섞어서 납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현지 관리들의 묵인하에 확산되어갔다. 황제는 만주의 인삼을 만주족 고유의 방식으로 장악하고 이 지역의 전통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재배삼의 등장은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 주제어

인삼, 재배, 자연환경, 만주, 만주족

---

## I. 머리말

가경7년(1802) 정월 10일 길림장군 시오린(Siolin, 秀林)은 길림의 인삼 채취와 공납 상황에 대해 황제에게 보고했다. 이 상주문에서 시오린은 만주의 인삼이 점점 귀해져서 채삼인들이 더 멀리 떨어진 산으로 캐러 가야 하고 관에 납부해야 할 인삼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오린이 제안한 것은 재배삼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사실 길림의 채삼인들은 이미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캐낸 인삼이 너무 작고 가늘면 1-2년간 산에서 길렀다가 관삼으로 납부하는 관행이 채삼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다. 시오린의 판단으로는 “이전의 규정에 얽매어 인삼의 재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듬해 관삼의 액수를 채울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sup>1)</sup> 따라서 이미 확산된 인삼 재배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이 황실이 인삼 공납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었다.

당시 시오린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8년이 지난 가경 15년(1810)에 황제는 시오린에게 사형을 내렸다. 죄목은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삼 정책을 문란하게 한 것이었다. “시오린은 蓼政을 처리하면서 사사로이 상인에게 은량을 부과하여 침탈한 것이 3만여 량에 달하고 길림의 大小 관리들 역시 이러한 부정을 모방하여 국고를 침탈했다. 또한 길림의 카룬 초소를 멋대로 철폐하여 眞蓼은 유출되고 채삼인들이 사사로이 재배한 인삼을 섞어 넣어 관삼의 액수를 채우게 했다. 시오린은 이를 모르는 척하며 마음대로 속이게 하였으니 모든 폐단이 모두 시오린에서 비롯되었다. (중략) 그가 법을 어긴 것이 매우 심하니 참형에 처해야 하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자살을 명한다.”<sup>2)</sup>

가경제가 말하듯이 시오린은 과연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였을까? 건륭 59년(1793)에 장군에 제수되어 가경14년(1809)까지 무려 15년간 길림을 관할한 시오린은 건륭58년(1792)에 길림부도통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미 인삼 행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건륭제는 바오린(Baolin, 寶琳)을 신입 길림장군으로 임명하면서 “시오린이 길림의 인삼 업무를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 蓼務와 관련된 일은 시오린과 회동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할 정도였다.<sup>3)</sup> 얼마 후 바오린이 병으로 죽자 건륭제는 시오린을 곧 길림장군에 임명했다. 가경제가 즉위한 후에도 시오린은 계속 길림장군으로 재직하다가 가경14년(1809)에 공부상서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이부상서로 전임했다.

사실 가경제는 오랫동안 시오린을 신임했으며 그에게 만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맡겼다. 가경5년(1800) 황제는 만주어도 알

1) 〈吉林將軍秀林爲請旨歇山並准攬頭存留蓼苗在園栽養事奏摺〉(가경7/1/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蓼務檔案選編』上, 『歷史檔案』2002-3, pp. 51-52.

2) 『清仁宗實錄』 권236, 가경15/11/11.

3) 『高宗純皇帝實錄』 권1448, 건륭59/3/2.

아들지 못하고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도 평범하다고 비난받는 정황기 만주 기인을 길림으로 보내게 하고 “길림 지방은 淸語와 騎射가 모두 좋은 곳이니 시오린에게 맡겨 학습하게 하라”고 지시했다.<sup>4)</sup> 가경제에게 길림장군 시오린은 기인에게 “만주의 근본” 즉 만주어와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신하였다. 시오린은 황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길림장군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호랑이, 표범, 곰 등 각종 야생 동물을 산 채로 잡아서 황제에게 바쳤다. 황실의 발상지에서 자라는 동물을 황실의 근간인 팔기 관병이 사냥하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야말로 만주족이 자신들의 고토인 만주의 자연을 조상의 舊法에 따라 지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sup>5)</sup> 시오린은 자신이 관할하는 길림과 그곳의 팔기 병사들이 청제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시오린은 청 황제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만주족 관리였다.

이처럼 황제의 신임을 받던 시오린이 자살 명령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재배삼을 방치하고 심지어 허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청대에 걸쳐 인삼의 재배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가경제는 특히 “인삼 재배는 거짓된 것으로 참된 것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여겼다.<sup>6)</sup> 가경15년(1810)에 만주에서 진공한 관삼에 재배삼이 포함되어 있음이 알려지자 당시 이부상서였던 시오린은 과거에 인삼 재배를 옹호했던 일로 황제의 심문을 받았고 마침내 삼정을 어지럽힌 주범으로 탄핵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본뜻은 충분한 관삼을 징수하여 황실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황제에 대한 충심도 인삼 재배라는 금기를 넘을 수는 없었다. 인삼은 만주의 자연에서 자란 것을 만주족의 전통 방식에 따라 채취해야 할 것이지 사람이 기르는

4) 『淸仁宗實錄』 권64, 가경5/4/16.

5) 김선민, 「청대 길림의 팔기 관병과 호랑이 진공」, 『史叢』 102, 2021.

6) 『淸仁宗實錄』 권226, 가경15/2/27.

것이 아니었다. 만주와 만주족을 지켜야 할 길림장군이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시오린은 처벌되어야 마땅했다.

청대 蔘政에 대한 무수한 연구 성과에 비해 재배삼에 대한 專論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최근 廖曉晴과 蔣竹山은 건륭59년(1794)과 가경15년(1810)에 발생한 吉林蔘務案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건륭연간부터 만주의 삼정이 상인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었으며 가경연간에 이르러 재배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소개했다. 廖曉晴은 길림삼무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삼의 고갈에 있었으며 길림의 관리들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단과 문제가 발생했음을 설명했다. 청 황실이 만주의 인삼을 독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만 골몰하여 인삼을 보호하려는 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했음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요효청의 연구는 국가의 이해나 관리들의 대응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청대 삼정 연구의 시각을 따르고 있다.<sup>7)</sup> 한편 蔣竹山은 청대 삼정의 추이에 주목하고 시기별 변화를 분석했다는 면에서는 기존의 연구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결론에서 인삼을 둘러싼 생태환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요효청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蔣竹山에 따르면 “동북의 인삼, 특히 재배삼은 생태환경과 국가권력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길림장군이 제안한대로 재배삼으로 관삼을 대체하는 것은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파괴를 줄이고 야생 산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오린의 주장은 생태환경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sup>8)</sup>

7) 中國第一歷史檔案館,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歷史檔案』2000-1;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歷史檔案』2002-3;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下, 『歷史檔案』2002-4; 廖曉晴, 「乾隆五十九年蔘務案」, 『滿族研究』2013-4; 「論清朝查禁秧蔘政策」, 『清史研究』2018-5.

8) 蔣竹山, 『人蔘帝國: 清代人蔘的生產消費與醫療』, 浙江大學出版社, 2015, pp. 141-143. 蔣竹山の 이러한 지적은 그가 인삼 문제에서 환경사의 중요성을 의식하

蔣竹山이 시사한대로 19세기 만주의 재배삼 문제는 황실의 인삼 독점이나 관리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기존의 시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만주에서 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을 대하고 관계맺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배삼의 등장은 18세기 후반부터 한인이 만주로 대거 이주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만주는 원래 토착 부족민들이 이곳의 삼림에 서식하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수렵 채집하여 살아가는 곳이었고, 농경을 주된 생활방식으로 삼는 한인들의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청말까지 만주는 만주족 황실이 흥기한 신성한 땅으로 여겨져서 이곳에 주둔한 팔기 관병을 제외하고 한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팔기 관병이 추가로 배치되고, 주둔한 군사들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경작할 한인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민인의 만주 이주는 꾸준히 증가했다.<sup>9)</sup> 황실의 발상지를 보호하고 군사 요충지를 방어한다는 청대 만주 통치의 기본 원칙은 실제로 주둔 병사를 부양하는 한인의 노동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인의 출입 통제는 사실 청대 만주 통치의 기본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한인의 이주는 청대 만주의 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청황실은 입관 직후부터 만주에서 인삼 채취를 독점해갔다. 만주지역에 주둔한 팔기 관병은 정해진 액수의 인삼을 채취하여 황실에 납부해야 했고, 황실은

---

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위의 간단한 언급 이상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분석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9) 18세기 후반 이래 한인의 만주이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林士鉉,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01; 荒武達朗,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2008; Robert H. G. Lee,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James Reardon-Anderson, *Reluctant Pioneers -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등이 있다.

만주에서 보내온 인삼을 내무부 창고에 저장하여 황실의 약재로 쓰고 나머지는 시가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sup>10)</sup> 그러나 청대 인삼 정책은 점차 한인들에게로 개방되어갔다. 옹정연간에 국가가 한인 상인들에게 인삼 업무를 위탁하고 기인과 민인 모두에게 인삼 채취를 허락하면서 한인들은 점차 인삼의 채취·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채삼활동에 민인들의 불법적인 채삼활동이 더해지면서 만주의 자연삼은 빠르게 고갈되어갔다. 그 결과 자연삼을 확보하지 못한 채삼인들은 재배삼을 몰래 섞어서 납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현지 관리들의 묵인하에 확산되어갔다. 재배삼 허용을 제안한 시오린에게 자살을 명령한 지 불과 1년 후에 가경제는 인삼 채취를 끝낸 채삼인들이 산에 머무르며 겨울을 보내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은 사실상 인삼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였다. 만주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하는 추세는 황제의 힘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본고는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한인의 이주와 재배삼의 등장을 통해 살펴본다. 1장은 먼저 건륭연간과 가경연간의 『琿春副都統衙門檔』 기록을 통해 한인의 만주 이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만주에 주둔하는 팔기 관병과 그들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해 토지를 경작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민인도 함께 증가했음을 훈춘협령의 보고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2장은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의 자료를 분석하여 19세기 초에 이르러 만주의 인삼 행정이 사실상 한인들의 참여와 협조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채

10) 청대 삼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今村鞆, 『人蔘史』 1-7, 朝鮮總督府, 1939; 王佩環, 「清代東北采蔘業的興衰」, 『社會科學戰線』 1982-4; 叢佩遠, 『東北三寶經濟簡史』, 農業出版社, 1987; 宋抵·王秀華 編著, 『清代東北蔘務』, 李樹田 主編, 長白叢書 第五集, 吉林文史出版社, 1991; 佟永功, 「清代盛京蔘務活動述略」, 『清史研究』, 2000-1.

삼인의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과 상인의 기부금 납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청대 삼정이 상업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3장은 「嘉慶朝蔘務檔案選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배삼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고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청실록』에 수록된 가경제의 諭旨를 분석하여 만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북경 황실의 인식이 길림 현지의 인식과 달랐음을 드러낼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광서7년(1881)에 길림장군의 주청에 따라 길림의 재배삼이 합법화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 II. 길림의 민인 이주

### 1. 청의 만주 통치

데이비드 벨로(David Bello)가 지적하듯이 만주족과 한인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사실 그들이 거주한 자연환경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중국 내지의 한인은 주로 밀·보리·쌀 등 곡물을 생산하는 농경민이었다. 이들은 단위면적당 곡물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랜 세월을 걸쳐 노력해왔고 이 과정에서 한인이라는 특정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한곳에 정착하여 주어진 토지를 경작하여 곡물을 생산하고, 국가의 지배에 복종하며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사람들, 즉 온순하고 선량한 백성을 뜻하는 양민(良民)이 바로 그들이었다. 증원에 정착한 온순한 농경민의 모습은 가축 떼와 함께 이동하며 위협을 가하는 북방의 유목민과 대비되어 한인의 민족적 특징으로 강조되었다. 결국 한인의 특징으로 여겨지



는 농경문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는 중원의 농경지에서 인간과 생태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sup>11)</sup>

인간과 생태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원에서 한인의 농경문화를 만들었다면 만주에서는 만주족의 수렵 채집 문화를 만들어냈다. 명대 여진족이 거주했던 만주는 지리적으로 광활하고 환경적으로 다양했다. 요하 이남의 평원지대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한인 거주민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중국 문화가 발달했다. 반면 요하 서쪽, 대흥안령 산맥의 북쪽과 남쪽 일대, 그리고 현재 길림성과 요녕성 서부의 초원지대는 일년 평균 강수량이 30cm 정도의 반건조 지역으로 목축이 발달했다. 한편 동쪽으로 장백산 일대에서 우수리강과 흑룡강에 이르는 넓은 삼림지역에서는 수렵과 어렵이 발달했다.<sup>12)</sup> 만주에서 면화와 같은 한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요하 이남의 평원지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의 토질은 농경에 이상적이지 않았다.<sup>13)</sup> 그 결과 여진족의 전통적인 경제활동은 동북의 삼림지역에서 동식물을 사냥하거나 채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4)</sup> 이후 청대에 걸쳐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은 수렵

11) David Bello,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 21-31.

12) Lee,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pp. 3-4;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pp. 6-11.

13) 성경에서는 강희초년부터 면화를 대량으로 재배했지만 길림에서는 면화가 생산되지 않았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면화 재배가 가능했는데, 길림에서는 이런 날씨가 120-160일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성경의 기인과 달리 길림의 기인은 의복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았다. 옹정7년(1729)과 옹정13년(1735)에 길림에서 면화 재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도광1년(1821)에 吉林將軍 푸준(Fujun, 富俊)이 쌍성보에서 면화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高志超, 「清代吉林地區的棉花試種」, 『清史研究』, 2020-7.

14) 유소맹 저, 이훈 외 역,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2, p. 93.

채집에서 발전한 기마 궁술과 불가분한 것으로 널리 강조되었다.

만주족이 입관한 후 만주는 청 황실의 발상지이자 만주족의 고토로 보호되었다. 청은 만주를 중국 내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는데, 무엇보다 팔기 병사, 즉 기인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旗籍에 등록된 기인 이외의 사람들은 민인이라 불렸고 기인과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sup>15)</sup> 청대 민인은 원칙적으로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청 황실이 북경으로 천도한 직후에는 민인의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으나 강희말년부터 점차 민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건륭5년(1740)에 이르러 청대 만주의 봉금은 마침내 공식화되었다.<sup>16)</sup> 그러나 실제로 청의 만주 봉금은 일관된 정책이 아니었다. 만주의 발상지와 만주족의 특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제국의 변경을 수비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청 황실은 상황에 따라 만주 이민을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 통제하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sup>17)</sup>

청대 길림에서는 길림장군의 관할 하에 기린, 닝구타, 버두너, 일란 할라, 알추카 등 5개 지역의 부도통을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sup>18)</sup> 부도

15)塚瀬進,「中國東北統治の變容- 1860-80年代の吉林を中心に」,左近幸村 編著『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跨境史への試み』,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p. 271.

16) 청대 만주 봉금에 대해서는 王景澤,「對清代封禁東北政策的再認識」『東北師大學報』166, 1997; 張杰,「柳條邊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中國邊疆史地研究』9:1, 1999; 張杰,「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中國邊疆史地研究』, 1994:4, 1994.

17) 청의 봉금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도 다소 엇갈린다. 제임스 리어던 앤더슨 (James Reardon-Anderson)은 청의 정책이 모순적이었으며 “청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했고 결정한다 해도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James Reardon-Anderson, *Reluctant Pioneers*, p. 69. 반면 아라타 케 타츠로(荒武達朗)는 건륭5년의 봉금이 민인의 이주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기 보다 만주로 이동하는 인구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하고 청의 만주 정책에 목표와 지향점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荒武達朗,『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渤海を渡つた人びと』,汲古書院, 2008, pp. 38-46.

통의 주둔지는 주방팔기가 주둔하는 군사거점이었고, 병사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주변에 官莊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군사거점 외에는 황무지와 삼림이었고 인구는 대체로 희박했다.<sup>19)</sup> 18세기에 이르러 민인 이주민이 증가하자 옹정4년(1726)에 기린 인근에 永吉州, 닝구타 인근에 泰寧縣, 버두너 인근에 長寧縣 등을 설치하여 민인의 사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민정기구를 유지하기에는 민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태녕현은 옹정7년(1729)에 폐지되었고, 장녕현은 건륭원년(1736)에 폐지되어 영길주로 통합되었다. 건륭12년(1747)에 다시 영길주를 永吉直隸廳으로 만들고 理事同知를 설치하여 길림장군의 관할 하에 민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sup>20)</sup>

청의 봉금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인의 만주 이주는 그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성경에서는 민인의 증가가 둔화된 반면 길림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19세기 전후에 길림지역으로 유입되는 민인이 크게 증가하자 가경5년(1800)에 장춘청, 가경15년(1810)에 버두너 직예청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길림에는 기린, 장춘, 버두너 세 곳에 민정기구가 설치되었고, 한인 이주민, 즉 流民은 쫓아내지 않고 호적에 편입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계속 거주하게 했다.<sup>21)</sup> 아라타케 타츠로(荒武達朗)의 표현대로 “길림은 가경연간 한인 이민의 프론티어”가 되었다. 19세기 만

18) 라린은 건륭9년(1744)에 처음 부도통이 설치되었다가 건륭34년(1769)에 철폐하고 알추카 부도통에서 함께 관할하게 했다. 훈춘은 강희53년(1712)에 협령이 설치되었고 광서7년(1881)에 부도통으로 승격되었다. 任玉雪, 『清代東北地方行政制度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pp. 33-41; 黃松筠·欒凡, 『吉林通史』, 吉林人民出版社, 2008, 2권, pp. 219-225.

19) 塚瀨進, 「中國東北統治の變容- 1860-80年代の吉林を中心に」, p. 273.

20) 「寧古塔副都統衙門爲飭查報有無藏匿民人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3/10), 『琿春副都統衙門檔』 10:135.

21) 塚瀨進, 「中國東北統治の變容- 1860-80年代の吉林を中心に」, p. 274.

주의 한인 인구 증가는 守堡·鄉約·保長 등 향촌공동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鄉職이 이 시기에 널리 설치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가경연간에 이르러 만주 각지에는 향약제도가 널리 보급되었고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면서 지방관과 민간 사이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sup>22)</sup>

## 2. 훈춘의 민인 이주

민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만주 이주는 여전히 불법이었다. 건륭연간과 가경연간에 걸쳐 길림의 민인 유입을 단속하라는 황제의 지시는 『琿春副都統衙門檔』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건륭 42년(1777) 황제는 길림장군 푸춘(Fucun, 富椿)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했다.

성경과 길림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大業을 연 땅이다. 민인들이 함께 뒤섞여 거주하면 만주인들의 옛 법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관계된 일이 많으므로 일찍부터 민인들의 거주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국가가 태평한 지 100년이 넘었고, 또한 성경은 해안을 따라 산동·직예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므로 유민이 점차 모여든 것이 매우 오래되었다. 이들을 한번에 쫓아내면 생계를 잃게 될 것이므로 성경 지역에 주현관을 설치하여 관리하게 했다. 길림은 성경처럼 민인들이 있는 땅과 경계를 접하지 않는다. 결코 민인을 거주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주현관들을 철폐하고 엄히 조사하여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지금 유민이 점차 많아진다고 한다. (중략) 이 일은 만주인들의 옛 법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처음부터 엄하게 방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유민을 철저히 금지해

22) 荒武達朗, 「嘉慶年間南滿洲の郷村役: 近代前夜の地域社會と郷村統治」, 『徳島大學總合科學部人間社會文化研究』 23, 2015.

서 경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길림지역으로 가는 유민은 모두 성경을 지나므로 지금 이후로 여러 관문과 해상으로 길림지역으로 가는 민인들을 엄히 금하라.<sup>23)</sup>

그러나 길림장군 푸춘은 민인을 단속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황제에게 길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기린 올라, 버두너, 닝구타, 일란 할라, 알추카, 라린 등지의 산은 모두 관삼을 캐는 (자들의 통행증인) 照票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매년 만여장의 조표가 발행되면 곧 만여명의 사람이 산으로 가는 데다가, 인부를 고용하는 상인이 수만명에 이릅니다. 사람이 사는 산과 골짜기, 외진 곳이 많아서 처자식을 데리고 친척과 만나서 몰래 사는 무리들을 모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sup>24)</sup> 길림은 인삼이 자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산으로 숨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민인의 유입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황제의 단속 지시는 길림장군을 통해 길림 각지의 부도통에게, 그리고 닝구타부도통을 통해 다시 훈춘협령에게 전달되었다. 닝구타 부도통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토지를 경작한 민인들을 훈춘에서 모두 쫓아내라고 지시했다. 훈춘협령은 기인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고용된 민인의 이름과 출신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팔기 관원의 구사, 니루, 이름도 장부를 만들어 부도통아문에 제출해야 했다. 또한 매달 팔기 관병을 파견해서 고용된 민인들과 장부에 적힌 이름을 대조하여 조사하고, 가을에 추수가 끝난 후 이들을 쫓아낸 다음, 장부에 있는 이름에 원을 그려 표시하고 이를 다시 부도

23) 「寧古塔副都統衙門爲飭查報有無藏匿民人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3/10), 『琿春副都統衙門檔』 10:134-135.

24) 「寧古塔副都統衙門爲飭查報有無藏匿民人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3/10), 『琿春副都統衙門檔』 10:136-137.

통아문에 보고해야 했다. 닝구타부도통은 “당책에 이름이 없는 유민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훈춘협령은 그때마다 민인을 모두 쫓아냈다고 보고했다.<sup>25)</sup>

고용된 민인을 모두 쫓아냈다는 훈춘협령의 보고와 달리 건륭연간에 훈춘의 민인은 꾸준히 증가했다. 건륭55년(1790)에 훈춘협령은 건륭26-54년(1761-1789)에 훈춘의 기인에게 고용되어 토지를 경작하는 민인의 수를 길림장군에게 보고했다.<sup>26)</sup> 아래 [표 1]에서 보이듯이 건륭26년에 471명이던 훈춘 민인의 수는 건륭54년에 1,11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표 1] 건륭연간 훈춘 거주 민인의 수

연도	민인의 수	연도	민인의 수
건륭26년	471	건륭45년	991
건륭27년	411	건륭46년	809
건륭28년	435	건륭47년	831
건륭29년	531	건륭48년	825
건륭30년	535	건륭49년	833
건륭31-40년	415	건륭50년	895
건륭41년	698	건륭51년	993
건륭42년	644	건륭52년	1074
건륭43년	833	건륭53년	957
건륭44년	721	건륭54년	1,116

25)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고용된 민인을 쫓아내라는 지시는 건륭연간 『琿春副都統衙門檔』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暫署琿春協領關防佐領特興額爲報雇傭民人種地情形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33/2/29), 7:55-56; 「琿春協領扎穆拉爲派員核査商人匠役旗人等雇傭民人並出具保結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40/9/6), 9:406-410; 「寧古塔副都統衙門爲派員解送雇用種田民人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3/8), 10:119-121; 「寧古塔副都統衙門爲將多餘墾

민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개간하는 토지도 함께 늘어났다. 건륭54년(1789) 훈춘의 기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11,800晌이었는데, 이듬해에는 그 액수가 13,179晌으로 증가했다. 닝구타 부도통이 지적한대로 몇 달 사이에 경작 토지가 1,300여상이나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민인이 개간한 토지를 추가로 찾아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을 것이다.<sup>27)</sup> 이러한 수치는 훈춘에 유입된 민인들이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훈춘에 들어온 민인들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다.<sup>28)</sup> 건륭40년(1775) 기인에게 고용되어 농사를 짓다가 가을 추수가 끝난 후 훈춘에서 쫓겨난 민인 린구왕성(Zin guwang šeng)은 관병의 단속을 피해 인근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지내다가 봉천부 출신 민인 시더성(Si de šeng)을 마주쳤다. 시더성은 닝구타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가지고 인삼을 채취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행 중에는 허가증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黑人, 즉 불법채삼인도 포

---

民查明驅逐等情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8/8), 10:365-366; 「琿春協領扎穆拉爲查報琿春三佐領雇傭民人耕地情形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42/5/4), 11:102-104; 「琿春協領扎穆拉爲報派員解送琿春額外雇耕民人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42/7/11), 11:174-175; 「琿春協領扎穆拉爲委員解送二隊額外雇耕民人赴寧古塔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42/8/15), 11:215-216; 「琿春協領巴延圖爲造送旗人及商人雇用民人花名冊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51/4/26), 14:498-499.

26) 「琿春協領巴延圖爲查報本地旗人雇傭民人數目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乾隆55/6/1), 『琿春副都統衙門檔』 18:189-190.

27) 「署琿春協領關防佐領巴扎爾爲報琿春旗人田畝及所雇民人數目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55/7/23), 『琿春副都統衙門檔』 18:244-247.

28) 『琿春副都統衙門檔』의 자료를 바탕으로 훈춘의 민인 사회를 분석한 최근 연구로는 馬金柱, 「清代東北封禁政策下的旗民交往關係—以乾隆朝吉林琿春爲例」 『歷史檔案』 2020-1; 張心雨, 「邊禁之下: 朝鮮金仁述越境殺人案探究」 『清史研究』 2020-5 등이 있다.

함되어 있었다. 시더성은 린구왕성에게 은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린광성이 시더성의 칼에 찔려 죽고 말았다.<sup>29)</sup> 민인의 거주가 금지된 훈춘 일대에서 고용 노동자와 인삼 채취인이 서로 어울리다가 살인까지 벌인 것이었다. 한편 가경원년(1796)에 영길주 출신의 민인 조오린(Joo rin)은 훈춘에 들어와 고용 노동으로 기인의 토지를 경작했는데, 가경11년(1806)에 이르러는 기인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의 여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훈춘에 들어오는 채삼인들에게 곡식과 술을 팔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기인과 동업을 하기도 했다.<sup>30)</sup> 훈춘협령의 보고에 등장하는 민인들의 이주 과정, 노동, 기인과의 관계는 대체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느슨하게 걸쳐 있었다. 훈춘의 상황은 건륭연간과 가경연간에 걸쳐 길림에서 민인의 유입과 토지 개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민인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길림장군 시오린은 길림에 들어온 민인을 당책에 등록시켜 지역을 안정시키고 조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가경5년(1800)에 시오린은 고를로스 지방에서 토지를 개간하는 민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고 상주했다. 기린 울라, 버두너, 닝구타에서는 옹정4년(1726) 이래 민인에게 세금을 징수해오고 있으므로<sup>31)</sup> 몽고 지방에서도 이곳에 정착한 민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당시에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32)</sup> 그러나 가경13년(1808)에 시오린은 또다시 유민이 개간한 토지를 민인의 당책에 포함시켜

29) 「琿春協領扎穆拉爲報審理民人持刀傷人致死一案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건륭40/11/30), 『琿春副都統衙門檔』 10:2-16.

30) 「琿春協領扎呼傷爲拘審滋事民人趙仁並送寧查辦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가경11/6/28), 『琿春副都統衙門檔』 24:481-488.

31) 「寧古塔副都統衙門爲飭查報有無藏匿民人事致琿春協領札文」(건륭42/3/5), 『琿春副都統衙門檔』 10:135-136.

32) 『清仁宗實錄』 권71, 가경5/7/8.



이들을 정착시키자고 상주했다. 이번에는 장춘청 일대의 민인들이 대상이었는데, 당시 시오린이 찾아낸 유민은 모두 3,110호에 달했다. 황제는 이들을 쫓아내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시오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미 개간한 것 외에는 1畝의 토지나 1戶의 유민도 늘어나지 않게 하라. 만약 다시 유민이 경계에 들어오면 엄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sup>33)</sup> 길림에 정착하는 민인이 계속 증가해도 황제의 유시 속에서 유민은 언제나 단속의 대상이었다. 길림에 있는 시오린의 상황 파악과 달리 북경에 있는 가경제는 여전히 만주를 한인이 아닌 만주족의 땅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기인과 민인의 잡거를 금지하고 팔기와 旗地를 유지한다는 만주 통치의 기본 원칙은 청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기지를 경작하여 기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민인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의 원천은 내지에서 이주해오는 한인들이었다. 토지를 경작할 노동력을 저가로 확보해야 하는 地主의 입장에서는 한인의 이주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또한 팔기 관병의 봉록을 모두 중앙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관의 입장에서는 민인에게 거두는 세금으로 재정수입을 보충할 필요도 있었다.<sup>34)</sup> 건륭말년과 가경연간에 화북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자 황실은 만주에 대한 봉금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민인의 이주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묵인 하에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여 토지를 개간했다.<sup>35)</sup> 중국 내지와 만주의 상황에 따라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만주에 주둔한 팔기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청말까지 계속되었다.

33) 『淸仁宗實錄』 권196, 가경13/윤5/17.

34) Lee, *The Manchurian Frontier*, pp. 112-113.

35) 荒武達朗,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 pp. 58-65.

### Ⅲ. 건륭연간 삼정과 민인

#### 1. 청대 삼정의 추이

청황실은 만주에서 만주족 고유의 수렵과 채집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만주의 다양한 자연자원 가운데 청황실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인삼이었다. 만주의 인삼은 만주족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자연 산품이자 황실 재정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는 상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북경의 황실은 멀리 떨어진 만주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채취와 유통을 독점하고 채삼인의 출입과 인삼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했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인삼과 관련된 규정이 청대에 비로소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은 만주족과 인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대 삼정에 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청대 만주에서 인삼 채취의 권한은 중앙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입관 전까지 인삼이 생산되는 蔘山은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왕공 귀족에게 나누어 지급되었고 서로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만 통제되었다. 그러나 강희40년(1701)에 “蔘山을 열어 인삼을 채취하는 일은 내무부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강희48년(1709)에는 “닝구타 등지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모두 황제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고 평소에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삼을 황실 소유의 재산으로 명시했다.<sup>36)</sup>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채삼에 대한 금령이나 단속에 실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세세하게 규

36)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山場」 722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4上.

정되었다.<sup>37)</sup> 만주 인삼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규정은 청황실이 인삼의 경제적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청대 만주는 중국 내지와 달리 팔기가 주둔하여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삼 업무도 팔기에서 담당했다. 17세기 말까지 만주의 인삼 채취는 대체로 부트하 올라(打牲烏拉) 총관아문과 盛京 上三旗 보오이 좌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38)</sup> 부트하 올라 총관에 소속되어 인삼을 캐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부트하 兵丁이었다. 병정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들은 팔기조직에 따라 편제되어 각자에게 할당된 수렵과 채취 업무를 담당했다.<sup>39)</sup> 부트하 올라 총관이 인삼 공납에서 면제된 것은 건륭 15년(1750)의 일로, 부트하 병정이 채취하는 인삼량이 점점 감소해서 이들에게 공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다.<sup>40)</sup> 부트하 올라 총관 외에 성경에 주둔한 팔기도 인삼을 채취했다. 성경 상삼기는 황제에 직속된 조직으로 만주에 흩어져 있는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청초기에 각 50명씩 매년 총 150명을 파견하여 인삼을 채취했다.<sup>41)</sup> 성경 상삼기는 황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인삼을 바쳐야 했다. 강희15년(1676) 황제가 살아있는 인삼을 부리에 딸린 흙과 함께 파내어 북경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자 성경 상삼기는 부리가

37)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권233, 「戶部, 蔘務, 考成」 742上-743上.

38) 만주어 “부트하(butha)”는 수렵과 채취를 가리키는 단어로, 육지의 동식물을 사냥하고 하천의 어류를 잡는 모든 활동에 사용되었다. “올라”는 길림 인근의 地名이다. 부트하 올라 총관아문은 올라에 주둔하며 수렵과 채집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 王雪梅, 「清代打牲烏拉總管衙門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pp. 3-4; 김선민,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2016.

39) 부트하 병정이 팔기 단위로 편제되었다는 것은 생산활동과 군사활동이 결합된 팔기의 초기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蔣竹山, 『人蔘帝國』, pp. 60-62.

40) 叢佩遠, 『中國東北史』 4, 吉林文史出版社, 1998, pp. 1590-1594, 1599-1600.

41) 佟永功, 「清代盛京蔘務活動述略」, 『清史研究』 2000-1, p. 43; 王佩環, 「清代東北采蔘業的興衰」, 『社會科學戰線』 1982-4, p. 189.

상하지 않도록 인삼을 채취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역참의 병정을 시켜 밤낮없이 서둘러 북경으로 보냈다.<sup>42)</sup>

만주에서 북경의 황실로 공납된 인삼은 내무부와 호부의 심사를 거친 후 일부는 황실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시가로 판매되었는데, 황실 저장고에 비축되었다가 나온 것이라 하여 “庫底蔘”이라고 불렸다. 황실은 만주에서 보낸 인삼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인삼은 황실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겨졌다. 한편 내무부를 거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만주에서 구입하여 내지로 가져와 판매하는 인삼은 관상을 공납하고 남은 것이라 하여 “餘蔘” 혹은 “商蔘”이라고 불렸다.<sup>43)</sup> 고저삼이든 여삼이든 인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인삼을 채취하거나 거래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가의 단속을 피해 불법채삼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17세기 말부터 만주의 불법채삼인에 대한 보고가 빈번해지고 이와 동시에 팔기의 인삼 채취도 아울러 부진해졌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었다. 황실은 우선 만주 인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채삼인을 단속하여 처벌하라고 거듭 지시했다.<sup>44)</sup> 자연자원의 고갈에 직면했을 때 인간중심적인 시각에서 나태, 무능, 부패를 지적하고 인간 노동력을 더욱 과도하게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청대 내내 만주 뿐만 아니라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응방식이었다.<sup>45)</sup> 채취할 인삼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국가가 독

42) 遼寧省檔案館 編譯, 『盛京蔘務檔案史料』, 遼海出版社, 2003, p. 10.

43) 蔣竹山, 『人蔘帝國』, pp. 15-17.

44) 『盛京蔘務檔案史料』, pp. 84-107 (康熙42/8/30, 42/9/12, 42/9/21, 42/10/17, 42/11/21, 43/4/9, 52/7/3).

45) Bello,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pp. 103-104.

접하고자 했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청대 인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만주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을 국가가 최대한 개발하여 이용하는 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팔기 병력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만주에서 자연 환경의 변화, 구체적으로 인삼의 고갈에 대처할 수 없었다. 옹정연간에 이르러 청은 인삼의 채취와 유통에 민인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옹정원년(1723)에 황제는 “채삼을 엄금한다 해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인삼을 훔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도를 정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채삼하고자 하는 자는 기인과 민인을 불문하고” 蔘票를 받아서 인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했다.<sup>46)</sup> 삼표란 황실과 戶部에서 인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채삼 허가증으로, 일정한 수량의 허가증을 발행하여 만주의 각 지역에 할당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채삼인에게 인삼을 징수하는 제도였다. 강희48년(1709)에 이미 강남의 鹽政에서 이용되는 鹽引을 모방하여 蔘引을 발행했는데, 옹정연간에 시작된 蔘票는 강희연간의 蔘引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이것은 곧 만주의 인삼을 팔기라는 만주족의 방식으로 충분히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삼표라는 한인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 만주족 황실이 만주의 인삼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인의 방식이 필요했다.

삼표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삼표를 받는 사람은 자금력이 있는 상인들이었다. 실제로 옹정8년(1730)에 우수리나 수이푼의 삼산은 상인을 모집하여 채삼하게 하고, 삼표 1장마

46)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권232, 「戶部, 蔘務, 山場」 725上.

47)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4下; 今村鞆, 『人蔘史』 2, p. 207.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에는 건륭연간까지 蔘票와 引票가 혼용되어 등장한다.

다 인삼 16량을 징수하여 10량은 국가에 납부하고 6량은 상인에게 지급했다.<sup>48)</sup> 상인이 삼표를 수령하여 채삼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국가는 먼저 그들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다. 상인이 소유한 점포·토지·건물의 문서를 호부에 보내 이들이 삼표를 감당할 만큼 재산이 넉넉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sup>49)</sup> 상인에게 인삼 채취를 위탁하는 방법은 한동안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얼마 후 삼표를 수령하려는 상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들에게 발행하는 삼표의 액수도 감소했다.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인삼의 액수도 함께 줄어들었다.<sup>50)</sup>

건륭연간에 이르러 인삼 행정은 다시 국가의 직접 관리로 전환되었다. 건륭원년(1736) 성경장군과 길림장군은 상인을 모집하여 인삼을 채취하게 하는 것보다 국가가 삼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하고 성경과 길림 두 장군아문에서 채삼인을 모집하고 보증인을 두어 삼표를 발행하자고 황제에게 상주했다. 만약 삼표를 수령한 채삼인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거나 지정된 액수만큼 인삼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대신 배상하게 하고, 蓼山の 입구에 관병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채삼을 단속하자고 제안했다.<sup>51)</sup> 이에 따라 국가의 인삼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인 관삼국이 설치되었다. 관삼국은 북경의 호부가 만주에 설치한 일종의 출장소로, 인삼의 채취와 징수를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다. 관삼국의 정확한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廖曉晴에 따르면 성경의 관삼국은 건륭2년(1737) 이전에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다가 건륭9년(1744) 무렵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길림과 닝구타의 관

48)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5下.

49) 蔣竹山, 『人蔘帝國』, pp. 96-97.

50) 『盛京蔘務檔案史料』, p. 173.

51) 葉志如, 「從人蔘專采專賣看清宮廷的特供保障」, p. 71. 한편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에 따르면 삼표 발행이 官辦으로 바뀐 것은 건륭9년(1744)이었다.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6上.

삼국도 이 무렵에 설치되었다.<sup>52)</sup> 관삼국은 해당 지역 장군이 관할하고 팔기 관병이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했다.<sup>53)</sup> 길림 관삼국의 운영은 길림장군의 책임 하에 關防協領과 여러 명의 幫辦協領이 인삼 수합, 삼표 발행, 錢糧 징수 등을 담당했다.<sup>54)</sup>

건륭연간에 만주의 관삼국은 다량의 인삼을 황실로 바쳤다. 葉志如是 만주에서 공납된 인삼이 보관되었던 황실 내무부 廣儲司 茶庫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륭-가경연간 황실이 징수하고 보관한 인삼의 액수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건륭12년(1747)에 새로 징수된 인삼은 1,901근 15량이었고 이듬해 황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2,082근 9량에 달하는 인삼을 사용했다. 건륭14년(1749)에 이르러 황실 창고에 저장된 인삼의 수는 1,562근 13량에 달했다. 이처럼 건륭초년은 황실이 인삼을 대량으로 징수해서 풍족하게 사용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황실이 징수하는 인삼의 수량은 점차 감소했다. 건륭12년에 1,900여근을 징수하던 것에 비해 가경연간에 황실로 보내진 인삼의 액수는 100근을 넘지 못했다.<sup>55)</sup>

52) 廖曉晴, 『論清朝查禁秧蔘政策』, p. 84.

53) 길림장군의 삼정 관리 책임에 대해 건륭55년에 군기처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길림장군은 채삼을 총괄하는 사람이다(girin ulai jiyanggiyūn orhoda gurure baita be uherileme icihiyara niyalma).” 『琿春協領巴延圖爲查報本地旗人雇傭民人數目事致寧古塔副都統衙門呈文』(乾隆 55/6/1), 『琿春副都統衙門檔』 18:185.

54) 〈欽差大臣福康安等爲訊明協領永保事片〉(건륭59/2/7),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 11. 光緒 『大清會典事例』의 가경15년 기록에 따르면 성경 관삼국에는 협령 외에도 좌령이 설치되었는데, 협령은 3년마다, 좌령은 2년마다 교체되었다. 관삼국에 배치되는 협령과 좌령의 숫자에는 따로 제한이 없었다.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蔘務, 考成』, 744下.

55) 葉志如, 『從人蔘專采專賣看清宮廷的特供保障』, p. 72.

## 2. 건륭59년(1794) 삼무안

청대 삼정은 팔기 병정을 파견하여 채취하는 방식, 부트하 올라 병정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방식, 상인을 모집하여 삼표를 발행하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삼표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했지만 그 일관된 목표는 국가가 인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었다. 관삼국의 설치에 대해 蔣竹山은 “蓼務 관리의 관료화”라고 평가했고 술레징거는 “蓼政의 영역화와 관료화”라고 묘사했다.<sup>56)</sup> 이들의 지적대로 관삼국은 만주에 주둔한 팔기 관원이 운영하는 기구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삼국의 설치로 인삼 행정에서 기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민인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인의 참여가 더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인삼 행정에서 관삼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팔기 관원의 권한도 함께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삼국 관원과 민간 상인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면서 삼정의 운영이 상인의 자본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이었다.

인삼의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고 황실과 시장의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蓼山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강희연간에 성경 인근에 위치한 열민과 할민의 삼산이 고갈되자 청은 우수리 강과 수이푼 강 일대를 채삼 지역으로 개방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산에는 인삼이 많이 자라고 있었지만 대신 채삼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졌다. 채삼인들은 산에서 필요한 물건과 경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했는데, 삼산 지역이 멀어지면서 필요한 경비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채삼 경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삼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삼표를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인삼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56) 蔣竹山, 『人蓼帝國』, p. 82; Schlesinger, *Trimmed with Fur*, p. 82.



많은 사람들이 삼표를 적극적으로 수령하여 인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청은 채삼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강희연간에 이미 성경과 길림의 팔기 병정들에게 인삼을 채취하게 하면서 경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지만, 건륭연간에 이르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민인 채삼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성경, 길림, 닝구타의 관삼국은 기인과 민인을 막론하고 채삼을 원하는 자에게 삼표를 발행했는데, 이때 만약 입산 경비를 준비할 능력이 없으면 비축하고 있는 은량을 빌려주었다. 채삼인들은 산에서 내려와 삼표에 지정된 액수대로 관삼국에 인삼을 바치고, 남은 인삼을 팔아서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sup>57)</sup> 만주에서 인삼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청은 민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인삼을 채취하게 했던 것이다.

경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채삼인에게 관삼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接濟銀”이라고 불렸다. 길림에서는 건륭14년(1749)부터 접제은이 지급되었는데, 당시에는 인삼의 생산량이 비교적 풍부했기 때문에 매년 채삼인들에게 빌려준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륭51년(1786)이 되자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30%는 회수되지 못했다.<sup>58)</sup> 채삼인들이 접제은을 상환하려면 인삼을 넉넉히 채취해서 납부해야 할 관삼 외에 남은 인삼, 즉 餘蔘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상인에게 팔아서 은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인삼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여삼을 많이 채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륭59년(1794) 당시 관삼국이 지급한 접제은의 액수는 10,000-30,000량에 달했지만, 입산한 채삼인 가운데 30-40%는 인삼을 충분히 채취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삼표를 수령하고 접제은을 받은 채삼인들이 인삼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57) 葉志如, 「從人蔘專采專賣看清宮廷的特供保障」, p. 70.

58) 〈欽差大臣福康安等爲遵旨重擬蔘務章程事奏摺〉(乾隆59/2/17),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 16.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관삼국에게 남겨졌다. 길림 관삼국은 삼포에 할당된 액수대로 인삼도 징수하지 못했고 빌려준 접제은도 회수하지 못했다. 인삼 채취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접제은 제도가 관삼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sup>59)</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림장군과 관삼국 관리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인삼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이었다.<sup>60)</sup> 상인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은량은 “餘蔘銀”이라고 불렸는데, 이러한 관행은 건륭50년(1785) 길림장군 두르기야(Durgiya, 都爾嘉)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채삼인들로부터 접제은을 회수하지 못하고 북경에 보낼 인삼의 액수도 채우지 못하게 되자 다급해진 두르기야는 여삼을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인삼 1량에 은 8량-23량씩을 납부하게 했다.<sup>61)</sup> 관삼국은 상인들에게 기부금으로 거둔 은으로 인삼을 사서 북경에 바쳤다. 문제는 상인의 기부금으로 관삼을 충당하고 관삼국의 경비를 보충하는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두르기야의 후임 길림장군들은 계속해서 상인들의 기부에 의존했다. 건륭56-57년(1791-92)에 길림에서는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채삼인들의 물건이 불에 타버리고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삼국은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관삼국의 경비는 더욱 부족해졌다. 이때부터 길림 관삼국은 매년 상인들로부터 30,000-40,000량에 달하는 여삼은을 징수하여 관삼의 부족액을 보충했다.<sup>62)</sup> 이제 상인들이 없이는 관삼국의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59) 廖曉晴, 「乾隆五十九年蔘務案」, p. 28; 蔣竹山, 『人蔘帝國』, pp. 105-106.

60) 사실 상인들은 채삼인들에게 여삼을 매입할 때 이미 紅票銀兩 혹은 引票銀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건륭23년(1758)의 경우 상인들은 인삼 1근을 매입할 때 은 2량을 납부해야 했다.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7下.

61) 〈欽差大臣福康安等爲嚴訊承辦蔘務協領諾穆三等並查明庫項事奏摺〉(건륭 59/2/1),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 7.

이르렀다. 관삼국의 관리들은 팔기 관원이었지만 관삼국을 운영하는 것은 상인들의 자금이었다. 만주의 인삼 행정이 사실상 상인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에서 인삼이 고갈되어 채취량이 부족해지고, 채삼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삼표의 액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황실은 계속 인삼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건륭42년(1777)에 길림에는 삼표 2,000장이 할당되었는데, 만약 이 액수를 모두 발행하지 못하면 관리들은 처벌을 받아야 했다.<sup>63)</sup> 건륭55년(1790)에 길림 관삼국은 길림에 할당된 삼표 200장을 모두 발행하지 못하여 황실에 바쳐야 할 인삼의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북경의 군기처는 길림 관삼국의 관리들을 모두 혁직 유입시키는 처벌을 내렸다. 건륭56년(1791) 새로 길림장군에 부임한 형시오(Hengsio, 恒秀)는 또다시 길림에 할당된 삼표를 모두 발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황제로부터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표를 많이 발행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발행했다고 보고한 삼표의 액수만큼 인삼을 바쳐야 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관삼국의 적자로 남겨졌다.<sup>64)</sup> 황실의 인삼 징수 요구는 만주의 인삼 생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북경의 황실과 만주의 자연은 점점 유리되고 있었다.

62) 〈欽差大臣福康安等爲詢問吉林將軍恒秀供情並請旨革職事奏摺〉(건륭 59/1/21),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 5.

63) 그러나 만주에서 실제로 삼표를 발행한 액수는 호부의 할당액에 미치지 못했다. 건륭52년(1787)에 호부가 성경과 길림에 할당한 삼표 5,000장 가운데 실제로 발행된 것은 2,330장에 불과했다. 이후 할당액은 점차 감소하여 건륭59년(1794)에 길림에 할당된 액수는 500장이었다.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28上-下.

64) 〈欽差大臣福康安等爲嚴訊承辦蔘務協領諾穆三等並查明庫項事奏摺〉(건륭 59/2/1),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 7.

황실의 계속되는 요구와 고갈되어가는 인삼 사이에서 길림 관리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건륭58년(1793) 길림 관삼국은 북경으로부터 삼표 800장을 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결국 200장 밖에 발행하지 못했다. 인삼 채취가 어려워지면서 삼표를 수령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삼표 600장을 발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삼표 600장에 해당하는 인삼을 징수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결국 관삼국의 경비를 사용해서 삼표 600장에 해당하는 액수의 인삼을 구입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관삼국의 고질적인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된 길림장군 형시오는 삼표를 강제로 발행하기로 했다. 그는 民戶에게 삼표 400여장, 鋪戶에게 100여장을 부과하고 각자 채삼인을 고용하거나 직접 채취하여 인삼을 납부하게 했다. 인삼을 채취하지 못하면 삼표 1장당 은 200량을 납부해야 했다. 삼표를 수령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러한 부담을 떠맡은 민호와 포호는 크게 반발하여 새로 부임한 길림부도통 시오린에게 이 사실을 고소했다. 미래의 길림장군이 될 시오린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황제에게 보고했다.<sup>65)</sup>

이른바 건륭59년 길림 삼무안은 건륭제가 사천총독 푸강안(Fukangan, 福康安), 형부상서 胡季堂, 호부시랑 松筠을 흠차대신으로 길림에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흠차대신들의 조사에서 길림 관삼국의 업무를 맡고 있던 협령 諾穆三은 당시 길림의 인삼 채취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蓼山은 광활하여 수천 리에 이르는데 최근 입산 경로가 매우 멀어져서 (필요한) 양식과 의복의 비용이 전보다 배나 많아졌습니다. 숲속에서 한번 길을

65) 〈欽差大臣福康安等爲詢問吉林將軍恒秀供情並請旨革職事奏摺〉(건륭59/1/21), 『乾隆五十九年吉林蓼務案』, p. 6.

없으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들짐승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채삼인은 길을 잘 알고 인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인삼을 채취하고 찌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채삼인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官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삼을 많이 캐지 못하여 이익이 없어지니 점차 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빚진 채삼인에게 만약 빚을 차압하여 회수하려 하면 인삼을 캐려는 자가 부족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산에 들어가기를 꺼리게 되어 삼표를 수령하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빚진 채삼인들에게 예전대로 접제은을 지급하여 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전에 餘蔘銀이 많을 때는 1만 수천량에 달했습니다. 저희들은 1-2년 사이에 여삼은이 예전의 액수를 회복하고 채삼인들이 모두 빚을 갚으면 (관삼국의) 官庫를 모두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뜻밖에 최근 여삼은의 액수가 예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sup>66)</sup>

그러나 길림 관삼국의 협령 諾穆三과 托蒙阿가 각각 80-90칸에 이르는 가옥을 소유하고 세내어주는 자산가들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건륭제는 부정한 관리들이 인삼에서 얻은 이익을 빼돌리고 국고를 침탈했다고 의심했다. 이어서 황제는 길림의 관리들이 채삼인에게 빌려준 접제은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관삼국 협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길림장군의 무능 탓이라고 질책했다.<sup>67)</sup> 건륭제는 길림 관삼국의 적자가 인삼 행정에 관여하는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건륭제의 이러한 반응은 제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던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가 일관되게 보인 모습이기도 했다. 길림에서 인삼 징수가 어려워진 것은 만주의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하여

66) 〈欽差大臣福康安等爲遵旨重擬蔘務章程事奏摺〉(건륭59/2/17),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2000年 p. 13.

67) 『高宗純皇帝實錄』 권1445, 건륭59/1/22.

나타난 결과였지만, 황제는 이것을 오히려 인간의 관리와 통제가 부족하여 빚어진 결과로 이해했다. 건륭제에게 길림 삼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었다.

길림에 파견된 흠차대신 푸강안의 보고는 황제의 판단과는 달랐다. 우선 채삼인의 부채 문제는 입산 경비가 증가하여 관삼국의 보조금 없이는 채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다. 관삼국의 적자 문제는 할당된 삼표를 모두 발행하지 못한 일로 전임장군이 비난과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한 후임 장군이 삼표 발행액을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촉발된 사안이었다. 발행하지 못한 삼표의 부족액을 보충하고 동시에 채삼인의 입산 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삼국의 적자가 심해진 것이었다. 푸강안은 길림 장군 형시오와 관삼국 관리들이 부정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10만량에 달하는 관삼국의 적자는 누군가 책임져야 했다. 이에 푸강안은 관삼국 협령 諾穆三을 斬候에 처하고 托蒙阿은 신강으로 發遣하고 諾穆三의 형제와 친족에게 채삼인들에게 빌려준 접제는 3만량을 대신 납부하게 하자고 상주했다.<sup>68)</sup>

건륭제는 길림의 삼무안에 연루된 길림장군 뿐 아니라 조사를 위해 파견된 흠차대신들까지 질책했다. 황제에 따르면 길림장군 형시오는 관삼국의 적자 액수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상관없는 민호에게 부담을 전가한 죄가 있었고, 흠차대신 푸강안은 형시오와 고종사촌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숨겨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와 동행한 한인 대신 胡季堂은 길림의 관리들이 사용하는 만주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삼 행정도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sup>69)</sup> 하지만 사건은 결국 푸강안의 제안

68) 〈欽差大臣福康安等爲審明吉林蔘務案並定擬事奏摺〉(건륭59/2/17),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p. 11-14.

69) 반면 황제 자신은 길림 관삼국의 협령들이 관삼국의 이익을 탐하고 있음을 금방 파악했다고 강조하며 “짐은 올해 84세이나 정신이 분명하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대로 처리되었다. 우선 농사에 힘써야 할 민호에게 삼표를 강제로 부과하는 일을 금지하고, 대신 길림의 삼표 할당액을 800장에서 500장으로 줄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접제는 보조와 삼여은 징수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었다. 채삼인의 경비가 부족하므로 이전대로 보조금 30,000량을 지급하고, 이들이 산에서 나오면 관삼을 제출하고 남은 여삼에서 보조금의 액수대로 공제하게 했다. 만약 채삼인들이 상환한 액수가 부족하면 상인의 기부금으로 보충하게 하고 이를 蔘餘銀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 인삼 1량에 부과하는 삼여은은 20량을 넘지 않게 했다. 이로써 관삼의 납부액이 부족하거나 채삼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상인의 삼여은으로 보조하게 함으로써 길림 관삼국의 운영을 상인이 지원하는 관행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sup>70)</sup>

18세기 초 강희연간까지 만주족 황실의 근본지에서 자라는 인삼은 민인이 접근하여 채취할 수 없는 신성한 물품이었지만, 18세기 말 건륭말년에 이르자 민인의 자금과 노동력으로 생산되는 세속적인 물품이 되었다. 그러나 건륭제는 만주 인삼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채삼인의 의무를 강조했다. “길림의 인삼은 채삼인이 산에서 나올 때 관에 납부하는 것 외에 획득한 나머지 여삼을 판매하여 호구지책으로 삼았다. 채삼인들이 여삼을 팔아서 혜택을 얻는데 어찌 번번이 관에서 돈을 빌리고 계속 갚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나 황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채삼인들이 빚진 관은을 모두 탕감한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산에 들어가 힘써 인삼을 채취하여 길이 멀다는 것을 핑계로 관삼을 체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전처럼 게으름을 피우면 중죄로 처벌

있다”고 말했다. 『清高宗實錄』 권1447, 건륭59/2/26.

70) 건륭59년 푸강안의 吉林蔘務章程은 “欽差大臣福康安等爲遵旨重擬蔘務章程事奏摺”(건륭59/2/17),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pp.15-18;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蔘務, 公用」 740下.

할 것이다.”<sup>71)</sup>

건륭제에게 길림의 인삼 부족 문제는 채삼인들과 관리들의 나태함이 초래한 결과였다. 황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만주의 자연에서 인삼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은 인간이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다. 북경의 황제가 만주의 자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은 한, 만주의 인삼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 건륭제의 사후 길림에서 다시 삼무안이 발생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 IV. 재배삼의 등장

### 1. 인삼의 채취와 재배

인삼은 生長이 느린 식물이었다. 성장 속도가 늦고 생산량이 제한된 자원을 국가 주도 하에 매년 대량으로 채취한 결과 만주의 인삼은 점차 고갈되어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이 시도한 것은 멀리 떨어진 곳의 삼산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 외에 삼산에 휴식제도를 도입하여 인삼이 자랄 수 있게 기다리는 것이었다. 옹정연간에 이르러 우수리나 수이푼 등지의 삼산에서는 2년간 인삼을 채취한 후 1년간 삼표 발행을 중지하고 산을 휴식시키는 방법이 도입되었다.<sup>72)</sup> 그러나 불법채삼이 행해지는 한 삼산의 휴식제도는 유명무실했다. 국가가 삼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몰래

71) 『清高宗實錄』 권1448, 건륭59/3/2.

72)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山場」 722下.



산에 들어가 인삼을 캐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건륭48년(1783)에 이르러 “불법채삼으로 인해 산을 휴식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므로 이전대로 삼표를 발행하게 했다. 가경연간에도 산의 휴식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sup>73)</sup>

생산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은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물론 인삼의 재배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었고 인삼을 재배한 사람들은 불법채삼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sup>74)</sup> 그러나 가경연간에 인삼 가격은 건륭 초기에 비해 열배 이상 상승했고 치솟는 인삼의 가격 앞에서 국가의 금령은 무력했다.<sup>75)</sup> 사람들은 인삼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가경15년(1810)에 발생한 길림 삼무안은 바로 이 재배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성경과 길림에서 북경으로 보내오는 관삼에 秧蓼, 즉 재배삼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삼국의 관리들이 이를 묵인해왔다는 사실이 황제에게 발각되면서 인삼 재배의 관행이 전면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재배삼의 등장은 단순히 관리의 부정부패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만주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삼은 이리 저리 찾아다니며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재배하는 물품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가경15년의 길림 삼무안은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실 만주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경8년(1803)부터 이

73)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蓼務, 山場」 723下.

74) 건륭42년(1777)의 규정에 따르면 재배한 인삼을 팔거나 사는 일은 모두 일률적으로 처벌되었다.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蓼務, 禁令」, 753下.

75) 건륭2년(1737)에 인삼 1량에 은 20량이던 가격이 가경12년(1807)에는 은 140량으로 뛰어올랐다. 가경15년(1810)에 강남의 양회지역에서 四等蓼은 1량에 250-260량, 五等蓼은 200량에 거래되었다. 廖曉晴, 「論清朝查禁秧蓼政策」, p. 87; 蔣竹山, 『人蔘帝國』, p. 131.

미 북경에 알려지고 있었다. 당시 호부의 조사에 따르면 삼표 1장을 수령한 채삼인은 관삼국에서 접제는 200량을 받았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200-300량을 더 준비해야 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채삼인들은 채취한 인삼이 뿌리가 비어있거나 너무 작으면 땅에 옮겨 심어서 길렀다가 가을이 지난 후에 관삼으로 납부했다. 채삼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공적인 재배 과정은 불가피했다. 인삼을 재배하지 못하면 삼표에 지정된 액수만큼 관삼을 납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삼을 거래하여 채삼 경비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sup>76)</sup>

봄과 여름에 풀이 자라기 전에는 인삼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가을에 초목이 무성해지면 인삼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채취한 인삼은 뿌리가 단단하지 않고 물렸기 때문에 관삼으로 납부할 수도 없고 시장에 팔수도 없었다. 채삼인들은 인삼을 키우는 움막인 秧子房을 지어 채취한 인삼을 옮겨 심고 자라기를 기다렸다. 옮겨 심은 인삼이 모두 제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공하면 秧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한 채삼인은 양삼을 재배한 첫 해에는 모두 실패했지만 이듬해에는 8-9량, 그 다음해에는 11량을 얻었다. 그는 삼표에 지정된 액수대로 관삼을 납부하고 또 남은 여삼을 팔아서 은 300여량을 벌었다.<sup>77)</sup>

인삼 재배는 채삼인들의 우두머리로 자본이 있고 부유한 欄頭와 包門人이 주도했다.<sup>78)</sup> 난두가 관삼국에서 삼표를 직접 수령하는 사람들이라면 포문인은 소주제조업자들의 삼표를 대신 수령하는 사람들이었다. 권릉

76) 〈戶部爲議駁吉林將軍秀林擬蔘票加夫並准栽養秧蔘事奏摺〉(가경8),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55.

77) 〈欽差大臣文寧等爲訊得秧蔘情弊令人犯戴罪辦蔘事奏摺〉(가경15/8/7),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下, pp. 25-26.

78) 〈吉林將軍秀林爲請旨歇山並准攬頭存留蔘苗在園栽養事奏摺〉(가경7/1/10),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51.

말년에 삼표를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감소하자 청은 부유한 소주제조업자, 즉 燒鍋鋪戶들에게 삼표를 수령하여 채삼인의 관삼 납부를 보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sup>79)</sup> 소과포호들은 직접 채삼을 하지 않고 대신 포문인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삼표를 대신 수령(包攬)하고 채삼인을 모집하게 했다. 삼표를 수령하여 입산 채취한다는 점에서 포문인은 난두와 역할이 비슷했고 이 때문에 난두라고 불리기도 했다. 결국 난두와 포문인들은 채삼인의 관삼 납부를 보증할 수 있는 세력가들이었다.<sup>80)</sup>

채삼인을 모집하고 입산하여 인삼을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난두나 포문인들이 관리했다. 건륭42년(1777)의 규정에 따르면 관삼국에서 발행한 삼표는 1장당 채삼인 4명이 입산하여 관삼 2량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소개한 훈춘 민인 시더성(Si de šeng)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난두와 포문인들은 삼표에 허용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추가 인력(餘夫)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들은 黑人 혹은 私人이라 불렸다. 입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보고하면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관삼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삼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산에 들어간 채삼인들은 일부는 인삼을 채취하고 일부는 蔘園, 즉 인삼 재배지를 관리했다.

79) 건륭말년에 이르러 청조는 삼표를 수령한 채삼인이 도망하면 관삼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인 제도를 도입했다. 채삼인이 삼표를 수령할 때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이들이 도망하면 보증인이 인삼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보증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소주제조업자들이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관삼국, 채삼인, 소과포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으나 인삼 채취량이 감소하면서 소과포호는 점차 삼표 수령을 회피하게 되었다. 蔣竹山, 『人蔘帝國』 p. 144. 소과포호의 채삼에 대해서는 川久保悌郎, 「清代滿洲における燒鍋の簇生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1960; 蔣竹山, 『人蔘帝國』, pp. 133-144; 김선민, 「17-18세기 청대 인삼정책의 변화」, 『중국학보』 74, 2015, pp. 420-421.

80) 廖曉晴, 「論清朝查禁秧蔘政策」, p. 90; 蔣竹山, 『人蔘帝國』, p. 136.

가경8년(1803)에는 삼표 1장에 채삼인 18명이 입산하는 일도 있었다.<sup>81)</sup> 나중에 길림장군 시오린이 밝히듯이, 난두들이 사사로이 채삼인들을 추가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은 공공연한 관행이었지만 관삼국은 이러한 위법행동을 묵인했다. 난두가 삼표를 수령하고 채삼인의 관삼 납부를 보증하는 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82)</sup>

만주에서 인삼 채취가 소과포호, 난두, 포문인, 채삼인들 사이에 복잡하게 분업화되면서 재배삼이 점차 관삼 속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두와 포문인들이 재배삼을 몰래 관삼으로 납부해도 관삼국의 관리들은 그대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재배삼은 자연삼과 모양이 똑같을 뿐 아니라 크기와 빛깔이 더 좋았기 때문에 양질의 자연삼과 쉽게 혼동되었다. 실제로 재배삼을 관삼에 섞어 넣어도 관리들은 크고 굵은 것을 좋게 여기고 그 질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 가경15년(1810) 당시 길림 관삼국의 협령 錢保는 좋은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붉은 빛이 돌며 큰 것은 재배삼이고 껍질이 거친 것이 좋은 삼”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나는 북경에서 나고 자라서 인삼의 좋고 나쁨은 구별할 줄 모른다”고 실토했다.<sup>83)</sup>

가경연간에 이르러 재배삼은 관삼으로 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유통되었다. 인삼 상인들은 재배삼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사실 이들이 관삼국에 납부하는 참여은도 재배삼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에서 나온 것이었다. 관삼국의 협령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경15년(1810)의 조사에서 “상인들은 재배삼을 매매하여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

81) 〈欽差大臣文亨等爲訊得秧參情弊令人犯戴罪辦參事奏摺〉(가경15/8/7), 『嘉慶朝參務檔案選編』下, p.26.

82) 〈吉林將軍秀林爲請旨歇山並准攬頭存留參苗在園栽養事奏摺〉(가경7/1/10), 『嘉慶朝參務檔案選編』上, p. 51.

83) 蔣竹山, 『人蔘帝國』, p. 129.

문에 기꺼이 다량의 삼여은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sup>84)</sup> 가경13년(1808)에 닝구타 관삼국의 협령들이 상인들에게 징수한 삼여은의 사용 내역을 보면, 관삼국의 운영이 사실상 상인의 기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닝구타의 채삼인들은 일란 할라 지방으로 가다가 타고 가던 배가 부서지자 일란 할라 부도통아문에서 은 1,100량을 빌려 배를 수리했는데,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일란 할라 부도통은 닝구타 관삼국에게 상환을 독촉했다. 이에 닝구타 관삼국과 닝구타 부도통은 상인들에게 삼여은을 추가로 징수하여 일을 처리했다. 이때 상인들에게 징수한 은 1,600여량 가운데 일란 할라의 선박 수선비 1,100량을 갚고 남은 것은 닝구타 관삼국 아문의 지분을 수리하는 데 200량, 닝구타의 문묘 전각을 수리하는 데 300량이 사용되었다.<sup>85)</sup>

당시 닝구타 부도통은 상인들에게 삼여은을 징수하여 채삼인들의 빚을 대신 갚고 관아의 건물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길림장군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북경의 호부에게는 상인들이 낸 돈의 액수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sup>86)</sup> 이 때문에 가경제는 이 일을 관삼국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건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만주의 삼정이 상인이나 재배삼과 불가분하게 결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만주에서 인삼을 채취하고 관리하고 거래하는 주체는 만주족이 아니라 한인 민인이었고, 이들은 더 나아가 인삼을 재배하여 민간에 유통시키고 있었다. 만주의 자연은 이제 민인에 의해 민인의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제국의 만주족

84) 〈欽差大臣文寧等爲嚴訊薩音保等員侵吞商幫銀兩事片〉(가경15/8/14), 「嘉慶朝蔘務檔案選編」, p. 34.

85) 〈欽差大臣文寧等爲審明寧古塔局員違例多收蔘餘銀兩事奏摺〉(가경15/8/20),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下, pp. 36-37.

86) 〈欽差大臣文寧等爲審明寧古塔局員違例多收蔘餘銀兩事奏摺〉(가경15/8/20),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下, p. 37.

관리들이었다. 만주의 팔기 관원들은 만주족의 방식과 한인의 방식을 나누는 것보다 청제국의 이해, 즉 더 많은 관삼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재배삼을 허용하자는 길림장군의 제안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 2. 시오린의 상주

가경7년(1802) 정월 10일에 길림장군 시오린이 황제에게 재배삼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북경에 바치는 관삼과 민간에서 유통되는 인삼에 이미 재배삼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시오린은 먼저 길림에서 인삼 채취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관삼의 납부를 책임진 난두들이 지정된 숫자보다 더 많은 채삼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은 “입산 경로는 멀어지고 인삼은 귀해졌기 때문”이었다. 관삼국의 관리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관삼을 징수하기 위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법 채삼을 단속하기 위해 시오린은 우선 산을 휴식시키고 나아가 인삼 재배를 허용하여 관삼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관병을 파견하여 재배하고 있는 인삼의 수량을 파악하고 이듬해 관삼을 징수할 때 채삼인들을 지명하여 그들이 재배한 인삼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난두가 인삼을 재배하도록 허용하면 이듬해 삼표를 발행하고 관삼을 징수하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주장이었다.<sup>87)</sup>

시오린의 상주는 북경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호부는 시오린이 불법채삼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산을 휴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 방지했다면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

87) 〈吉林將軍秀林爲請旨歇山並准攬頭存留蔘苗在園栽養事奏摺〉(가경7/1/10),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52.

하고, 산을 쉬게 한 후에도 불법 채삼이 근절되지 않으면 휴식제도는 결국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부에 따르면 건륭42년(1777)의 삼무장정은 채삼인 4인이 삼표 1장을 수령해서 관삼 2량을 납부하게 했고, 인삼 재배는 불법채삼과 같은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시오린이 말한 내용, 즉 채삼인이 추가 인원을 불법적으로 데리고 입산하는 일이나 난두가 채취한 인삼을 재배하는 일은 모두 불법행위였다. 호부의 관리들은 “시오린은 단속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갑자기 사리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직언하니 그의 상주는 매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sup>88)</sup> 황제 역시 인삼 재배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공공연히 상주에 넣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 한 것이 교활하다고 시오린을 질책했다.<sup>89)</sup>

길림의 삼정에 대해 다시 보고하라는 황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가경7년(1802) 4월 20일 시오린은 두 번째 상주를 올렸다. 시오린은 먼저 불법채삼을 단속하는 일이 경비는 많이 들고 효과는 없었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건륭30년(1765) 이후 매년 팔기 관병을 파견하여 산에 들어가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에 불법채삼인들이 산에서 나오는 것을 체포하게 했으나 관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俸餉의 액수가 매년 수천량에 달했기 때문에, 건륭37년(1772)에 관병의 파견을 중지하고 대신 카룬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들이 입산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았다. 길림의 삼산은 넓고 길이 복잡하여 요충지에 카룬을 설치해도 출입을 단속하기 어려웠고, 산길에 익숙한 채삼인들은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몰래 산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또한 관삼국에 빚을 진 채삼인들은 채취한 여삼을 공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채삼인들에게 인삼을 맡겨서 산을 빠져나가게 했다. 이러한 폐단을 모두 제거하기란 불

88) 앞의 글.

89) 『淸仁宗實錄』 권93, 가경7/1/21.

가능했다. 호부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시오린은 삼포 1장에 허용된 채삼인의 숫자를 늘려야 불법채삼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90)</sup>

시오린은 재배삼이 관삼에 포함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륭42년(1777) 이전에는 길림에서 大支蔘이나 四等蔘을 황실에 진공한 예가 없었다. 그러나 이해 신임 길림장군 푸강안이 처음으로 진공한 이후 대지삼이나 사등삼과 같이 圓熟한 인삼을 관삼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삼인들이 채취하는 인삼은 대부분 작고 가늘어서 둥글고 큰 인삼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인삼 재배는 불법이었지만 사등삼을 납부해야 하는 채삼인들은 재배삼을 관삼으로 바치기 시작했다. 시오린은 “건륭43년(1778)에 채삼인들이 인삼을 재배하여 진공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사실대로 인정했다.<sup>91)</sup>

시오린의 보충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배삼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경8년(1803) 정월 24일 황제는 다음과 같이 유시했다.

인삼은 地靈으로 생산되는 것이니 만약 산에서 큰 인삼을 얻으면 규례에 따라 진공하고, 만약 큰 인삼을 얻지 못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무방하다. 어찌 인력을 써서 재배하여 거짓에 가깝게 하겠는가. 하물며 짐은 인삼을 복용하지 않고 다만 사물의 이치를 헤아릴 뿐이다. 산속에서 자라는 큰 인삼은 그 효력이 크겠지만 재배한 인삼은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 시오린이 누차 인삼의 재

90) 시오린에 따르면 삼포 1장에 입산이 허용되는 채삼인의 숫자는 건륭연간에 여러 번 조정되었다. 건륭32년 이전에는 삼포 1장에 5명이 입산하여 인삼 12량을 납부하게 했다. 이후 건륭33년에는 삼포 1장에 1명이 입산하고 인삼 5전을 납부하게 했다. 건륭42년에는 다시 삼포 1장에 4명이 입산하고 인삼 2량을 납부하게 했다. <吉林將軍秀林爲查報曆年劊夫夾帶私人及栽養蔘苗事奏摺>(가경7/4/20),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53.

91) <吉林將軍秀林爲查報曆年劊夫夾帶私人及栽養蔘苗事奏摺>(가경7/4/20),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53.



배를 요청하나 이는 실로 무의미하다.<sup>92)</sup>

사실 황제가 시오린의 상주를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앞서 1장에서 소개했듯이 가경5년(1800) 시오린은 고를로스 지방의 민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고 제안했었다. 그의 취지는 유민을 단속하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자는 것이었지만 황제에게 몽고의 민인 문제는 세금 징수원을 확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몽고가 유목하는 땅은 전례에 따라 내지의 민인이 경계를 넘어 들어가 개간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유목이 불편한 몽고인들이 민인을 초무하여 개간하게 하는 일이 오래되었다. 또한 몽고인들이 매년 소작료를 징수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 이에 예전대로 토지를 경작하여 소작료를 납부하게 한 것은 짐이 몽고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몽고의 유목지에서 토지를 개간하는 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세금의 수입을 탐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짐이 몽고를 아끼는 마음이 되겠는가.” 황제는 시오린의 상주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그가 일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sup>93)</sup>

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를 확충하고 인삼 재배를 허용하여 관삼을 확보하자고 제안하는 시오린은 분명 능력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재배삼 허용을 불허한 후에도 시오린에 대한 황제의 신임은 계속 이어졌다. 가경8년(1803)에 닝구타의 防禦가 황제를 알현할 때 만주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자 가경제는 “東三省 사람인 그가 평소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에 거주하여 만주어를 익히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황제는 그를 처벌하는 대신 시오린에게 보내 가르치게 했다. “동삼성은 우리나라

92) 『嘉慶道光兩朝上諭檔』 제8책, 가경8/1/24; 蔣竹山, 『人蔘帝國』, p. 124에서 재인용.

93) 『清仁宗實錄』 권71, 가경5/7/8.

라의 근본지이지고 만주어는 고향의 언어(鄉談)이니,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마땅한데도 만주어를 모르는 자가 있다. 동삼성에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으니 서로 따라서 습관이 된 것이다. 힘써 학습하지 않으면 技藝가 해이해지게 되니 관계됨이 매우 중하고 힘써 깨우치지 않으면 안된다.”<sup>94)</sup> 가경11년(1806)에도 工部의 관리가 황제를 알현할 때 만주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황제는 그를 길림으로 보내 시오린에게 만주어와 말타기 활쓰기를 가르치게 했다.<sup>95)</sup> 황제에게 길림장군 시오린은 기인에게 만주어와 騎射를 익히게 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가경15년(1810)에 이르러 시오린에 대한 황제의 신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해 2월 가경제는 만주의 모든 지역에서 보내온 관삼에 재배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장백산을 에워싸고 있는 성경·길림·닝구타 지역은 우리나라의 발상지이며 인삼과 같은 상서로운 풀이 자라는 곳이다. 200여년간 부근의 산지에서 인삼을 다수 채취했기 때문에 점차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양질의 인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장군들은 마땅히 실제 사정을 수시로 상주해야 하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인삼을 재배하는 일은 거짓된 것으로 참된 것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특히 금령에 위배되는 일이다. 최근 각지에서 보낸 관삼 가운데 재배삼이 섞여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재배삼은 모양은 크고 좋지만 품질은 실로 빈약하다.<sup>96)</sup>

당시 만주에서 공급한 인삼의 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성경, 길림, 닝구타에서 보낸 인삼 중에는 사용할만한 좋은 것이 매우 적었고 심지어 무

94) 『清仁宗實錄』 권113, 가경8/5/9.

95) 『清仁宗實錄』 권169, 가경11/10/22.

96) 『清仁宗實錄』 권226, 가경15/2/27.

계를 늘리기 위해 鉛을 넣은 것도 있었다. 성경의 인삼 가운데 좋은 것은 60%, 길림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성경에서 바친 사등급 이상 인삼 6근 가운데 2근은 재배삼이었고 길림에서 바친 사등급 이상 인삼은 모두 재배삼이었다.<sup>97)</sup>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황제는 만주의 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이로써 가경15년의 길림삼무안이 시작되었다.

황제는 먼저 관할장군들에게 책임을 묻고 특히 시오린이 인삼 재배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황제는 시오린을 직접 만나 그가 길림의 인삼 재배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북경의 상인들조차 재배삼의 유통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시오린은 황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삼인들이 거짓 인삼을 만들어 이익을 도모하는 사정을 방치한 것이었다. “근래 산에서 인삼의 생산이 감소하여 이전과 같이 큰 인삼을 구할 수 없으면 그 획득한 진삼을 진공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해낸 眞蔘의 수량이 적지 않아서 사용에 대비할 수 있는데, 반드시 꾸며 만들어내고 玉石을 뒤섞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은 성경, 길림, 닝구타에 모두 있으나 길림이 특히 심하다. 이는 시오린이 전에 상주한대로 인삼의 재배를 허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매년 인삼 재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sup>98)</sup>

시오린의 잘못은 단순히 인삼 재배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았

97) 성경에서 납부한 48근 12량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삼 13근 4량과 인삼고(泡丁) 15근 8량에 불과했다. 이외에 재배삼 18근 12량과 무게를 늘리기 위해 鉛을 녹여넣은 인삼고 1근 4량이 발견되었다. 길림의 인삼 59근 7량 5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인삼 1근 12량과 인삼고 18근 15량 3전을 제외하고 재배삼 37근 3량 2전, 연이 들어간 인삼고 15량이 발견되었다. 닝구타의 인삼은 17근 12량 8전으로 이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인삼 8근 12량과 인삼고 6근 12량 9전을 제외하고 재배삼 1근 14량 9전과 연이 들어간 인삼고 15량이 발견되었다. 『淸仁宗實錄』 권226, 가경15/2/27.

98) 『淸仁宗實錄』 권230, 가경15/6/11.

다. 길림에 파견되어 사건을 조사한 文寧 등 흠차대신들은 길림의 장군과 부도통들이 상인들에게 징수한 삼여은을 빼돌린 정황을 보고했다. 시오린은 길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군을 역임했고 국고를 침탈한 액수도 가장 많아서 30,000량에 달했다. 시오린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家人들도 이익을 나누어 가졌음이 드러났다.<sup>99)</sup> 한편 시오린이 삼정에서 얻은 삼여은을 빼돌려 이를 길림에 유배된 관리들과 교류하는데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경연간에는 종실의 일원으로 봉은장군을 세습한 縑武布<sup>100)</sup> 외에 여러 고관들이 죄를 짓고 길림으로 유배되었는데, 시오린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집을 지어주고 여행 경비를 보조해주었으며 명절에는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다. 황제에게 죄를 짓고 유배된 범인들을 길림장군이 접대했다는 것은 “형금이 해이해지고 국법이 무너진 일”이니 용서받을 수 없었다.<sup>101)</sup>

길림에 파견된 흠차대신 文寧은 현지의 인삼 재배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당시 길림장군 사이충가(Saicungga, 賽沖阿)는 인삼을 재배하는 움막을 불태우고 재배삼을 뽑아서 제거했지만 정작 범인들은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文寧은 사이충가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16명의 범인과 17곳의 蔘園을 찾아냈다. 인삼을 재배한 범인들은 액수에 따라 장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흠차대신은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들 대부분이 삼표를 수령한 자들이어서 이들을 처벌하면 관삼을 삼표의 액수대로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文寧은 체포된 범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여 속죄의 기회를 주자고 황제에게 상주하

99) 『清仁宗實錄』 권232, 가경15/7/21.

100) 縑武布은 종실의 일원으로 奉恩將軍을 세습했으며 건륭연간에 길림장군, 성경장군, 흑룡강장군 직을 모두 역임했다. 가경연간에는 哈密辦事, 烏什辦事大臣, 巴里坤領隊大臣, 西寧辦事大臣을 두루 역임했다.

101) 『清仁宗實錄』 권232, 가경15/7/21; 『清仁宗實錄』 권232, 가경15/7/24.

고, 다른 인삼 재배인들도 반드시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제는 이를 허락했다.<sup>102)</sup> 인삼 재배를 금지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인삼 재배법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하지만 황제는 여전히 재배삼 단속을 강조하라고 유시했다. “이후로 관에서나 민간에서나 모두 재배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인삼을 재배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라. 길림에서 좋은 인삼을 유출하는 경로를 반드시 차단하라. 그러면 삼정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sup>103)</sup> 재배삼은 북경에 있는 황제의 유지속에서만 금지되었고 만주의 산 속에서는 이미 널리 퍼져있었다.

가경제는 인삼을 재배한 난두들은 용서했지만 인삼 재배를 묵인한 전임 길림장군은 용서하지 않았다. 건륭제와 가경제 두 황제의 시기에 걸쳐 15년간 길림장군에 제수되는 영예를 입었음에도 시오린은 세 가지 죄를 저질렀다. 첫째, 그는 인삼 상인들에게 사사로이 은량을 부과하여 30,000량을 침탈했고 길림의 관리들이 그의 부정을 모방하여 국고를 훔치게 만들었다. 둘째, 그는 길림의 카룬을 멋대로 철폐하여 진삼은 유출되고 재배삼이 섞여 들어와 관삼을 채우게 방치했다. 셋째, 길림으로 유배된 관리들에게 힘든 노역을 부과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상인에게서 빼앗은 은으로 사사로이 그들을 접대하고 편하게 살게 했다. 황제는 그의 죄가 참형에 해당하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자살을 명했다.<sup>104)</sup>

시오린의 세 가지 죄 중에 어느 것이 결정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오린은 길림부도통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길림장군이 연루된 삼무안을 처리한 공로로 길림장군에 제수되었지만 결국 본인도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즉위 초부터 관료사회의 기강을 단속하고자

102) <欽差大臣文寧等爲訊得秧蔘情弊令人犯戴罪辦蔘事奏摺>(嘉慶15/8/7), 『嘉慶朝蔘務檔案選編』 下, p. 26; 廖曉晴, 『論清朝查禁秧蔘政策』, p. 89.

103) 『清仁宗實錄』 권233, 가경15/8/14.

104) 『清仁宗實錄』 권236, 가경15/11/11.

노력했던 가경제에게 오랫동안 신임해온 시오린의 독직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죄를 짓고 유배된 범인들을 고관으로 우대했다는 사실이 가경제의 분노를 가중시켰는지도 모른다.<sup>105)</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오린이 인삼 재배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재배삼을 관삼으로 진공했다는 사실이었다. 설령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황제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우대한 것이 시오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이유였다 해도, 재배삼을 황제에게 진공하여 만주와 만주족의 근간을 위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sup>106)</sup>

길림을 오랫동안 다스린 시오린은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곳의 토지와 동물과 식물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져가고 있음을 목격했다. 고를로스의 몽고 유목지에는 민인이 정착하여 토지를 경작하고 길림의 인삼 산지에는 민인 채삼인들이 들어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길림장군은 만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삼 정책 역시 그에 맞추어 자연삼 채취가 아니라 재배삼 징수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북경의 황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가경연간에 만주의 기인들은 대부분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황제의 이념 속에서 만주의 자연은 여전히 사냥과 채집의 공간이었다. 특히 인삼은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떤

105) 孟繁勇, 「清仁宗與吉林將軍秀林蔘務案」 『學理論』, 2015; 송미령, 「清 嘉慶帝의 親政 시작과 人事」, 『이화사학연구』 61, 2020.

106) 가경제는 만주의 기인과 자연에 대해서는 만주족다움을 강조했다지만 제국 내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옹정제와 건륭제의 중앙 유라시아 통치가 티베트 불교를 매개로 한 것이었음에 비해 가경제는 티베트 통치에서도 유가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村上信明, 「乾隆帝の時代の終わりと清朝の変容 清朝・チベット關係を中心に」, 『史境』 73, 2017. 가경제의 티베트 통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소개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방식으로 맺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로 보호되어야 했다. 인삼은 만주족의 고토인 만주에서 만주족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취되어야 할 자연의 산물이지만, 한인들이 개입하여 재배하고 길러서 만들어낸 인공물이어서는 안되었다.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재배삼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황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배삼의 합법화를 제안한 길림장군이 탄핵된 이유는 만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만주족 관리가 공개적으로 만주족의 만주족다움을 포기하고 한인의 역할을 인정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가경15년(1810) 황제가 시오린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기 몇 달 전에 길림장군 사이충가는 재배삼 단속에 따른 길림 삼정의 어려움을 상주했다.<sup>107)</sup> 그에 따르면 난두들은 관삼을 납부할 때 이전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재배삼 거래로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되자 삼표를 수령하려 하지 않았다. 자연삼의 고갈과 채삼 비용의 증가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재배삼 단속까지 더해지면서 삼표 발행과 관삼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 재배삼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자 상인들도 참여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상인이 납부하는 참여분으로 발행하지 못한 삼표의 부족분을 충당해온 관삼국의 운영도 함께 어려워졌다. 재배삼의 생산과 유통으

107) 〈吉林將軍賽冲阿等爲酌擬蔘務章程十二款請旨允行事奏摺〉(가경15/6/21/),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p. 68.

로 유지되어 온 만주의 삼정, 즉 관삼국의 삼표 발행, 채삼인의 삼표 수령과 관삼 납부, 상인의 여삼 거래와 삼여은 납부, 관삼국의 접제는 지급과 관삼 확보라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sup>108)</sup>

시오린의 자살 이후 길림에서 인삼 재배는 과연 사라졌을까? 가경15년 길림삼무안 이후 황제는 재배삼의 재배를 엄금하고 지방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장군과 부도통에게 매년 봄과 여름에 관병을 파견하여 산에 들어가 재배삼이 있는지 조사하게 하고, 인삼 재배가 발각되면 장군을 포함한 관할 지방관과 순찰 관원을 강등시켰다. 길림의 관삼국에서 관삼에 재배삼이 섞여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관을 처벌하고, 북경으로 운송된 후에 재배삼이 발각되면 해당 지역의 지방관과 관삼국 관원 뿐만 아니라 장군·부도통·부윤·시랑을 모두 강등시켰다.<sup>109)</sup> 산에 들어간 채삼인들에 대한 단속과 순찰도 강화되었다. 우수리와 수이푼 일대에서는 채삼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부도통이 관병 200명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수색하고 채삼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했다. 이 가운데 관병 100명은 산에 남아 주둔하면서 채삼인들이 인삼 재배를 위해 지어놓은 움막을 부수고, 나머지 100명은 연도의 카룬에 주둔하여 불법채삼인들을 체포하는 일을 하게 했다.<sup>110)</sup>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조치는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가경16년(1811) 길림장군 사이충가의 상주에 따르면 길림의 수이푼과 우수리 등지의 삼산은 거리가 만여 리나 떨어져 있어서 4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9월까지 나오려면 왕래에만 반년이 걸렸다. 상등품의 자연삼을 구하려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길이 멀고 경비가 많이 들었다. 사이충가는 채

108) 廖曉晴, 「論清朝查禁秧蔘政策」, p. 93.

109)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2, 「戶部, 蔘務, 額課」 730上;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蔘務, 考成」 745上.

110)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蔘務, 禁令」 756上.



삼인들이 왕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겨울에 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했다. “산에 남아 있는 채삼인들이 여러 곳에 나누어 머무르는 것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인삼을 길러 관삼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산에서 겨울을 보낸 채삼인들에게는 반드시 上等의 正蓼를 바치게 하고 나머지 여삼은 전례에 따라 팔아서 이윤을 얻게 하되, 삼표에 허용된 인원 외에 추가로 숨어있는 자들은 불법채삼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자는 제언했다. 황제는 사이충가의 상주를 받아들였다.<sup>111)</sup>

가경제는 재배삼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시오린에게 자살을 명령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채삼인들에게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합법적으로 제공해준 것이었다. 봄에 입산하면 가을에 반드시 산에서 나와야 한다는 금령이 해지됨에 따라 채삼인들은 해를 넘겨 산에 머무르며 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시오린과 마찬가지로 사이충가 역시 “인삼을 길러 관삼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가경15년의 길림 삼무안을 거치면서 황제는 재배삼을 단속하라는 유지를 반복해서 내렸지만 실제로는 재배삼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재배삼 없이는 관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주의 인삼으로 황실의 재

111) 이후 균기처는 사이충가의 제안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여 매년 산에 남아있는 채삼인의 숫자는 삼표에 허용된 인원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다. 팔기 관병들은 수시로 이들을 조사하여 腰票가 없는 黑人이나 인삼을 은닉하는 채삼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게 했다. 『寧古塔副都統衙門爲鈔綠官蓼局妥議稽查產蓼大山章程移付邊辦事致琿春協領札文』(가경17/3/10), 『琿春副都統衙門檔』 26: 87-92. 한편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에 따르면 채삼인이 산에서 겨울을 보내는 관행이 정식으로 허용한 것은道光4년(1824)이었다. “길림의 난두와 채삼인이 실로 수고가 심하여 스스로 헤아려 처리하게 하니, 모든 수이푼과 우수리의 삼산에서 산에서 겨울을 나는 채삼인들은 이전의 관례대로 처리하게 한다. (중략) 매해 산에 머무르는 채삼인은 삼표에 등록된 자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게 한다.”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3, 「戶部, 蓼務, 禁令」 756下.

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재배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가경제가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19세기에 만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져있었다.

그러나 재배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때까지 만주의 삼정은 끊임없이 부침했다. 삼표 발행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북경으로 공급하는 관삼의 액수도 계속 줄어들었다. 북경의 황실 내 무부에 저장된 인삼이 감소하자 이를 팔아서 얻는 은의 액수도 줄어들었다. 가경제는 인삼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성경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船規銀”을 부과했다. 선박마다 출항세로 은 20량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7량을 부족한 삼표를 보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다.<sup>112)</sup> 또한 각지의 해관에 “蔘斤加價銀”이라는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팔 수 있는 인삼은 없어도 은은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인삼 명목으로 계속 세금을 징수한 것이었다.<sup>113)</sup> 이것은 황실 재정의 수입원이 만주의 숲에서 항구로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도광연간에 이르자 만주의 관삼국에서 발행하는 삼표를 수령하여 관삼을 바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다. 함풍3년(1853)에 이르러 청은 마침내 삼표 발행을 중단했다. 인삼의 채취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청초부터 유지되어 온 황실의 인삼 독점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다.

삼표 발행이 중단되자 인삼의 재배는 더욱 성행하여 광서 초년에 이르자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산에서 채취한 작은 인삼 뿌리를 옮겨 심어 기르던 것이 점차 규모의 蔘園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당시 군비 조달이 시급했던 길림장군 밍안(Mingan, 銘安)은 광서7년(1881)에 이르러 재배삼에 대한 금령을 해제하자고 상주했다. “經費 문제

112) 佟永功, 「清代盛京蔘務活動述略」, pp. 47-48; 今村軻, 『人蔘史』 2, pp. 211-212.

113) 葉志如, 「從人蔘專采專賣看清宮廷的特供保障」, p. 75.

를 처리하고 유민을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 밍안은 길림에서 재배삼과 약재류에 대한 거래 금지를 해제하고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수입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광서제는 밍안의 제안을 수용했다. 당시 길림 일대의 비적들이 인삼을 재배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재배삼 거래를 합법화하여 비적의 수입원을 차단하고 동시에 국가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 마침내 북경과 길림 모두 재배삼의 합법화에 동의하게 되었다.<sup>114)</sup>

황제의 지시에 따라 밍안은 협령을 파견하고 蔘稅局을 설치하여 재배삼에 대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 길림에서 생산되는 재배삼과 약재는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약재의 귀천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sup>115)</sup> 밍안은 또한 길림 각성의 산장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戶의 수를 조사하여 이들을 인삼 재배호로 편제하고 삼세국에 와서 재배 허가증(執照)을 받게 했다. 인삼의 재배를 허용하는 대신 야생삼의 불법채취나 약재의 은닉은 금지되었다. 인삼 상인은 몰래 산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고 인삼을 재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산속에 숨어 사는 비적과 구별되었다.<sup>116)</sup>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만주에서 인삼은 채취하는 자연물이 아니라 재배하는 상품이 되었다. 내지의 한인들이 곡식과 면화를 재배하여 세금을 납부하듯이, 만주의 한인들도 인삼을 재배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한인의

114) 『吉林通志』 권43, 「經制志」 권8, 『東北史志』 제4부 7권, p. 3010.

115) 재배삼은 이익이 높은 상품이였기 때문에 시가로 1吊(동전 1,000文)의 인삼을 거래하면 가격의 10%인 동전 100文을 징수했다. 반면 黃耆나 黨蔘 등 22종의 약재에 대해서는 시가의 2%만 세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재배삼이나 약재를 100량 이상 거래할 경우에만 세금을 징수하고 100량 이하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했다. 『吉林通志』 권43, 「經制志」 권8, 『東北史志』 第四部 10卷,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p. 3011, 3013.

116) 『吉林通志』 권43, 「經制志」 권8, pp. 3011-3012.

공간이 만주로 확대되면서 이곳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만주에서 인간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22.02.14. 투고 / 2022.03.09. 심사완료 / 2022.03.16. 게재확정)

[Abstract]

**Ginseng cultivation and natural environment  
in nineteenth-century Manchuria**

Kim, Seonmin

This paper discusses the transformation of human-nature relations in Qing Manchuria by focusing on the Han Chinese immigration and the appearance of cultivated ginseng. The Qing imperial court had monopolized ginseng exploitation and circulation in Manchuria since the Manchu conquest of China. The Banner soldiers stationed in Manchuria were required to collect the given amount of ginseng per year and send them to Beijing. While some portion of the ginseng was used for the imperial family, the rest was sold in the market to make the imperial court a huge fortune. Since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Han Chinese people came to join ginseng collecting and the Yongzheng emperor formally permitted both bannermen and civilians to collect ginseng. As the large scale of state-initiated and organized ginseng exploitation was combined with illegal ginseng poaching led by Han Chinese civilians, natural ginseng in Manchuria was rapidly depleted. Finding it difficult to collect enough amount of natural ginseng, people began to cultivate ginseng and pay it to the state along with natural ginseng. This practice, despite being illegal, was connived by local officials, who had to send the assigned amount of ginseng to Beijing. The Jiaqing emperor tried to ban cultivated ginseng, which was not consid-

ered authentic, pure ginseng, but he eventually fail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Manchu way of ginseng collecting in Manchuria. The appearance of cultivated ginseng was a clear indication of showing that human-nature relations were fundamentally changed in nineteenth-century Manchuria.

□ Keyword

ginseng, cultivation, natural environment, Manchuria, the Manchus

[참고문헌]

1. 사료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乾隆五十九年吉林蔘務案」, 『歷史檔案』 2000-1.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上, 『歷史檔案』 2002-3.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嘉慶朝蔘務檔案選編」下, 『歷史檔案』 2002-4.  
 遼寧省檔案館 編譯, 『盛京蔘務檔案史料』, 遼海出版社, 2003.  
 光緒 『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古籍出版社, 1995.  
 『吉林通志』, 『東北史志』 第四部 10卷,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2. 연구서 및 논문

- 김선민, 「17-18세기 청대 인삼정책의 변화」, 『중국학보』 74, 2015.  
 김선민,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칭사연구』 46, 2016.  
 김선민, 「청대 길림의 팔기 관병과 호랑이 진공」, 『史叢』 102, 2021.  
 송미령, 「清 嘉慶帝의 親政 시작과 人事」, 『이화사학연구』 61, 2020.  
 유소맹 저, 이훈 외 역,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2.  
 高志超, 「清代吉林地區的棉花試種」, 『清史研究』, 2020-7.  
 佟永功, 「清代盛京蔘務活動述略」, 『清史研究』, 2000-1.  
 馬金柱, 「清代東北封禁政策下的旗民交往關係—以乾隆朝吉林琿春爲例」  
 『歷史檔案』 2020-1.  
 孟繁勇, 「清仁宗與吉林將軍秀林蔘務案」 『學理論』, 2015.  
 宋抵·王秀華 編著, 『清代東北蔘務』, 李樹田 主編, 長白叢書 第五集, 吉林  
 文史出版社, 1991.  
 王景澤, 「對清代封禁東北政策的再認識」 『東北師大學報』 166, 1997.  
 王雪梅, 「清代打牲烏拉總管衙門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王佩環, 「清代東北采蔘業的興衰」, 『社會科學戰線』 1982-4.
- 李治亨 主編,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 任玉雪, 『清代東北地方行政制度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 葉志如, 「從人蔘專采專賣看清宮廷的特供保障」, 『故宮博物院院刊』, 1990.
- 林士鉉,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01.
- 廖曉晴, 「乾隆五十九年參務案」, 『滿族研究』 2013-4.
- 廖曉晴, 「論清朝查禁秧參政策」, 『清史研究』 2018-5.
- 張傑, 「柳條邊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 『中國邊疆史地研究』 9:1, 1999.
- 張傑, 「清代鴨綠江流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4, 1994.
- 張心雨, 「邊禁之下: 朝鮮金仁述越境殺人案探究」 『清史研究』 2020-5.
- 蔣竹山, 『人蔘帝國: 清代人蔘的生產消費與醫療』, 浙江大學出版社, 2015.
- 叢佩遠, 『東北三寶經濟簡史』, 農業出版社, 1987.
- 叢佩遠, 『中國東北史』 4, 吉林文史出版社, 1998.
- 黃松筠·欒凡, 『吉林通史』, 吉林人民出版社, 2008.
- 今村 軻, 『人蔘史』 1-7, 朝鮮總督府, 1939.
- 川久保悌郎, 「清代滿洲における燒鍋の簇生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1960.
- 村上信明, 「乾隆帝の時代の終わりと清朝の変容 清朝・チベット關係を中心に」, 『史境』 73, 2017.
- 塚瀨進, 「中國東北統治の変容- 1860-80年代の吉林を中心に」, 左近幸村 編著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跨境史への試み』,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 荒武達朗, 『近代滿洲の開発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2008.
- 荒武達朗, 「嘉慶年間南滿洲の鄉村役: 近代前夜の地域社會と鄉村統治」, 『徳島大學総合科學部人間社會文化研究』 23, 2015.
- Bello, David.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



*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Lee, Robert H. G.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Reardon-Anderson, James. *Reluctant Pioneers -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